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
2025. 6. 23.(월) 10:00

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
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교통건설국 건설행정과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738호
- 나. 제 출 자 : 엄셋별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5. 5. 29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5. 29.

2. 제안이유

광고물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민간 지원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·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안전사고 방지 및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및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 관련 민간지원 세부내용 규정 신설(안 제10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안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1)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및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 관련 민간지원 세부내용 규정 신설(안 제10조제3항)
 - 광고물등 정비 및 개선사업
 - 풍수해 대비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
 - 불법 광고물등에 대한 정비
 - 광고물등 디자인 및 제작 공동작업장 설치
 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.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해 관련 민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590호, 2023. 8. 8., 타법개정]

제5조의2(국가와 시·도의 지원 및 시·군·자치구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)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6. 1. 6., 2017. 7. 26.>

1.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
2.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
3.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4.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5. 옥외광고사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
6. 필요한 예산의 확보,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7. 우수 광고물,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·군·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·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·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. 6.>

④ 시장등은 제3항의 지원계획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)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·추진하고,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·운영하며, 광고주·옥외광고사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

1. 6.>

⑤ 시장등은 관광진흥,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(併記)하도록 할 수 있다.

⑥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등(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를 말한다)은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1. 6., 2017. 7. 26.>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